제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8조 규정에 의거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 아 래 _

1. 일 시 : 2025년 3월 28일 (금) 오전 9시

2.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본사 3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44기(2024. 01. 01 ~ 2024. 12. 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ㆍ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ㆍ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성명	출생년월	등기임원여부	재직기간	임기만료일
최수현	1979.04	기타비상무이사	2023.07.13	2026.07.13
손교덕	1956.08	사외이사	2023.07.13	2026.07.13

ㆍ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출생연도	약력사항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사외이사 후보여부	추천인
임태상	1958.09	전 ㈜피죤 영업본부 이사 전 LG생활건강 부문장 전 LG생활건강 부장	해당사항 없음	Ф	상장회사 협의회 (사외이사 인력뱅크)
김형기	1961.03	현 증권경제신문 CEO 전 포커스뉴스, 폴리뉴스 등 편집국장	해당사항 없음	부 (기타비상 무이사)	이사회

※제2호의안이 부결될 경우 제4호 의안 자동 폐기

ㆍ제5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출생연도	약력사항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사외이사 후보여부	추천인
임태상	1958.09	전 ㈜피죤 영업본부 이사 전 LG생활건강 부문장 전 LG생활건강 부장	해당사항 없음	Й	상장회사 협의회 (사외이사 인력뱅크)
유영선	1960.05	현 (주)합천식품 CFO 부사장 전 케이에이치 케미컬 대표이사 전 에이티넘 파트너스 CFO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제2호의안이 부결될 경우 제5호 의안 자동 폐기

ㆍ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출생연도	약력사항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사외이사 후보여부	추천인
권오선	57.02	전 엔지비경영컨설팅㈜ 수석컨설턴트 전 ㈜현우산업 감사 전 ㈜팜한농 팀장	해당사항 없음	Ф	상장회사 협의회 (사외이사 인력뱅크)

※제2호의안이 부결될 경우 제6호 의안 자동 폐기

ㆍ 제7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10명(3명)	6명(3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억원	20억원

ㆍ 제8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5 년 3 월 18 일 오전 9 시~ 2025 년 3 월 27 일 오후 5 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인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1 조 2 항)
 -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 및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개인주주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③ 위임인의 인감날인
- 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공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 (http://www.kibplugenergy.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기, 백승륜 (직인생략)

◈ 제 1 호 의안 : 제 44 기 (2024.01.01 ~ 2024.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1. 연결 재무제표

가.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과목	제44기(2024년)	제43기(2023년)
유동자산	144,003	143,157
매출채권 등	132,634	136,479
재고자산	11,369	6,678
비유동자산	70,466	78,708
유무형자산	58,060	53,875
기타비유동자산	12,406	24,833
자산총계	214,469	221,865
유동부채	77,469	82,520
비유동부채	9,719	11,320
부채총계	87,188	93,840
자본금	118,641	118,466
잉여금	8,640	9,559
자본총계	127,281	128,025

나.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목	제44기(2024년)	제43기(2023년)
매출액	136,623	137,250
매출원가	113,023	107,969
매출총이익(손실)	23,600	29,281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3,678	16,398
영업이익(손실)	9,922	12,883
기타수익	12,153	7,720
기타비용	8,473	3,985
금융수익	4,294	3,484
금융비용	2,951	1,841
지분법손익	(12,806)	(1,758)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2,139	16,503
법인세비용	1,011	2,002
중단사업이익(손실)	0	0
당기순이익(손실)	1,128	14,501
기타포괄이익(손실)	(2,124)	107
총포괄순이익(손실)	(996)	14,608

2. 별도 재무제표

가. 별도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목	제44기(2024년)	제43기(2023년)
유동자산	142,986	141,921
매출채권 등	131,617	135,243
재고자산	11,369	6,678
비유동자산	71,483	79,944
유무형자산	58,060	52,784
기타비유동자산	13,423	27,160
자산총계	214,469	221,865
유동부채	77,469	82,520
비유동부채	9,719	11,320
부채총계	87,188	93,840
자본금	118,491	118,466
잉여금	8,790	9,559
자본총계	127,281	128,025

나.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목	제44기(2024년)	제43기(2023년)
매출액	136,623	137,250
매출원가	113,023	107,969
매출총이익(손실)	23,600	29,281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2,350	16,378
영업이익(손실)	11,250	12,903
기타수익	12,152	7,720
기타비용	6,223	3,985
금융수익	4,429	3,465
금융비용	2,951	1,841
지분법손익	(16,484)	(1,759)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2,173	16,503
법인세비용	1,011	2,002
당기순이익(손실)	1,162	14,501
기타포괄이익(손실)	(1,931)	107
총포괄순이익(손실)	(769)	14,608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단위:백만원)

과목	제44기(2024년)	제43기(2023년)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283		2,182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182		(11,964)	
당기순이익(손실)	1,162		14,501	
보험수리적이익(손실)	(1,061)		(355)	
이익잉여금처분액(결손금처리액)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283		2,182

- * 본 재무제표는 현재 외부 회계감사인의 심의 및 최종 검토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 외부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수정할 수 있음.

◈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현행	개정	비고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식회사 " 라고한다. 영문으로는 Kib plug energy Co., Ltd. 라표기한다.	제 1 호(상호) 본 회사는 <u>"디케이엠이 주식회사"</u> 라고한다. 영문으로는 <u>DKME Co., Ltd.</u> 라표기한다.	
제 4 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bplugenergy.com)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한국경제신문 (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 신문)과 울산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경상일보(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 신문)에 게재한다.	제 4 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한국경제신문 (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 신문)과 울산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경상일보(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 신문)에 게재한다.	상호 변경 및 홈페이지 주소 변경
제 24 조(이사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 3 인 이상 7 인 이내로 두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이사회에서 제 1 항의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추가할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2~5 생략	제 24 조(이사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 3 인 이상 10 인 이내로 두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이사회에서 제 1 항의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추가할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2~5 좌동	이사선임 한도 변경

제 22 조의 3(감사의 임기전 해임 등에 대한 의결방안)

이사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감사를 위하여 감사의 임기전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나 정관 제 22 조의 3 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100 분의 75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삭제)

제 34 조(감사)

- 1.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선임에 의하여 감사 1 인을 두며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2. 감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총회시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 3.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재임중인 감사의 잔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5.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6.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삭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7.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8.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9. 제 7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0.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11.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12.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3.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27 조(이사의 직무)

1~3 생략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 27 조(이사의 직무)

1~3 좌동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변경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즉시 <u>감사위원회</u>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이사회의 소집)

- 1. 생략
- 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 및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 3. 생략

제 32 조(의사록)

- 1. 생략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5 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3. 생략

제 38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1.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제 30 조(이사회의 소집)

- 1. 좌동
- 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1 일 전에 각 <u>이사에</u> 대하여 통지하여야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좌동

제 32 조(의사록)

- 1. 좌동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u>이사가</u>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5 조(이사의 보수)

- 1. <u>이사의</u>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 2. <u>이사의</u>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3. 좌동

제 38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1.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u>감사위원회의</u>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생략	2. 좌동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3. <u>감사위원회는</u>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4~5 생략	4~5 좌동
(신설)	제 28 조의 2(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1) 투명경영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 </u>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0 조, 제 31 조의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0 조, 제 3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0 조, 제 3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의 3(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0 조, 제 3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의 3(감사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제 28 조의 2 의 규정에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0 조, 제 3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의 3(감사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제 28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3.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0 조, 제 31 조 및 제 32 조의 규정을

1. 이사회의 결의로 제 28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2. 투명경영위원회는 투명경영위원회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8 조의 4(투명경영위원회)

<u>준용</u>한다.

있다.

3. 투명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투명경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0 조,	
<u>제 31 조 및 제 32 조의 규정을</u>	
<u>준용한다.</u>	

◈ 제 3 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성명	출생년월	등기임원여부	재직기간	임기만료일
최수현	1979.04	기타비상무이사	2023.07.13 ~	2026.07.13
손교덕	1956.08	사외이사	2023.07.13	2026.07.13

◈ 제 4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출생연도	약력사항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사외이사 후보여부	추천인
임태상	1958.09	전 ㈜피죤 영업본부 이사 전 LG생활건강 부문장 전 LG생활건강 부장	해당사항 없음	Ө	상장회사 협의회 (사외이사 인력뱅크)
김형기	1961.03	현 증권경제신문 CEO 전 포커스뉴스, 폴리뉴스 등 편집국장	해당사항 없음	부 (기타비상 무이사)	이사회

◈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출생연도	약력사항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사외이사 후보여부	추천인
임태상	1958.09	전 ㈜피죤 영업본부 이사 전 LG생활건강 부문장 전 LG생활건강 부장	해당사항 없음	Ö	상장회사 협의회 (사외이사 인력뱅크)
유영선	1960.05	현 (주)합천식품 CFO 부사장 전 케이에이치 케미컬 대표이사 전 에이티넘 파트너스 CFO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제 6 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출생연도	약력사항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사외이사 후보여부	추천인
권오선	57.02	전 엔지비경영컨설팅㈜ 수석컨설턴트 전 ㈜현우산업 감사 전 ㈜팜한농 팀장	해당사항 없음	ਲ	상장회사 협의회 (사외이사 인력뱅크)

◈ 제 7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10명(5명)	6명(3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억원	20억원

◈ 제 8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1. 부의 근거

- 상법 제 340 조의 2, 3, 4, 상법 제 542 조의 3, 상법시행령 제 30 조, 당사 정관

2. 부의 내용

-회사 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한 보상과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함.

- 행사가액 : 1 주당 518 원

-교부주식의 총 수 : 13,865,000 주

- 부여대상 : 154 명